

IFRS Brief

IFRS Newsletter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6년 5 · 6월호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1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2

I. 보험계약

II. 개념체계

Global 동향 6

I. 2016년 3월, 4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I. 2016년 3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IFRS 실무적용 해설 17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2016년 3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IASB가 발표한 IFRS 기준서 제 · 개정 사항, 공개초안(Exposure Draft, "ED"), 토론회(Discussion Paper, "DP") 및 해석서 초안(Draft Interpreta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초안] IAS 7 현금흐름표의 개정

배경

IASB는 공시원칙 프로젝트 중 현금흐름표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흐름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IAS 7 '현금흐름표' 기준서의 개정을 위한 공개초안을 2016년 1월에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개정안을 국내에 반영하기 위해 '현금흐름표 개정 공개초안'을 확정하여 외부의견 조회를 실시하였고 2016년 6월에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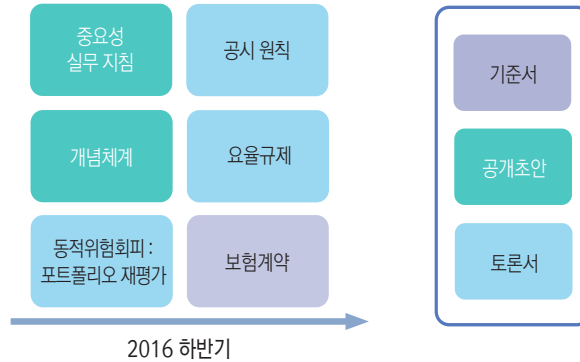
- ✓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 ✓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 ✓ 환율변동효과
- ✓ 공정가치 변동
- ✓ 그 밖의 변동

시행일과 경과규정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내용을 최초 적용 시 전기 정보를 비교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IASB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Major Projects)에 따른 기준서 개정 등의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주요 프로젝트 중 IASB의 3, 4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보험계약 (Amendments to IFRS 4 : Applying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with IFRS 4 Insurance Contracts)

3월 회의에서, 위원회는 'IFRS 9와 IFRS 4의 적용'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들과 outreach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기간은 2016년 2월 8일까지였다.

위원회는 IFRS 4에 대해 제안된 개정사항의 재심의를 대해 다음의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진행 방향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에게만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 규정을 제공한다는 공개초안의 내용을 확인함
- 한시적 면제 규정을 충족하는지는 보고기업 수준에서만 결정해야 한다는 공개초안의 내용을 확인함.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는 보고기업의 모든 활동을 고려해야 하고 보고기업은 IFRS 9이나 IAS 39 중 하나의 기준서만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해야 함
- 한시적 면제규정에 대해 고정된 만료일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함
- 손익변동성 조정 방법(overlay approach)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함
- IFRS 9 적용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과 손익변동성 조정 방법은 선택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함

4월 회의에서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손익변동성 조정 방법

위원회는 공개초안의 제안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 IFRS 4의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지정되고 IFRS 9을 적용하면 FVPL로 측정되지만 IAS 39에서는 FVPL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들에 대해 손익변동성 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손익변동성 조정 방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음
 - IFRS 4의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인식된 금융자산은 금융자산과 IFRS 4의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의 관계가 변경되었다면 새롭게 지정될 수 있음. 지정 시점에 새롭게 지정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새로운 상각후원가 금액이 되어야 함.

- IFRS 4의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관련되어 이미 인식한 금융자산은 금융자산과 계약의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지정이 해제되어야 함
- 이미 지정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인식된 누적 기타포괄손익은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때에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함
- 손익변동성 조정 방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조정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고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해야 함
- 손익변동성 조정 방법의 최초 적용과 적용 중지(공개초안의 35D, 35E(d), 35F)
- 세전 손익에 대한 손익변동성 조정 적용(공개초안의 BC24)
- 손익변동성 조정의 전환(공개초안의 41K)

IFRS 9의 한시적 면제 조항 - 적용 요건

위원회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 기업은 이전에 IFRS 9의 다른 version을 적용하지 않았어야 함
- ‘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기업의 지배적 활동이어야 하며, 해당 활동은 다음을 포함함
 - IFRS 4의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을 발행하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기업의 전체 부채와 비교했을 때 유의적인 금액의 부채가 발생함
 - IAS 39를 적용했을 때 FVPL로 측정되는 투자 계약을 발행함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 ‘지배 비율(predominance ratio)’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분자 : 다음의 장부금액의 합
 - ✓ 보험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부채
 - ✓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기타’ 부채
 - 분모 : 기업의 전체 부채의 장부금액
- 보험과 관련한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기업의 지배적 활동으로 간주됨
 - 지배 비율이 90%를 초과해야 함
 - 또는 지배 비율이 90%이하인 경우에는 동 비율이 80%를 초과하고 보험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을 기업이 유의적인 활동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면제 조항에 대한 공시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변경사항과 함께 공개초안에 제안된 37(a)-(d)의 공시사항을 확정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II. 개념체계

- 기업이 보고기간 종료일의 공정가치와 보고기간 중 공정가치 변동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문단 37A(c)를 변경함
 - 문단 37A(c)에 특정된 금융자산, 즉, SPPI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자산
 - 다른 금융자산, 즉, SPPI에 해당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자산
- 금융자산의 성격과 특징을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문단 37A(c)를 변경함
- 보고기간 종료일에 IFRS 9에 따라 낮은 신용위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37A(d)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에 대해 기업은 IAS 39에 따라 측정되는 공정가치와 “충” 장부금액을 공시해야 함
-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공되지 않은 개별재무제표에서 IFRS 9 정보를 기업이 참고하도록 요구함

IASB는 3월 회의에서 “재무보고와 업데이트를 위한 개념체계”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수집된 의견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4월 회의에서는 개념체계의 목적과 현재 지위와 재심의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다음에 대해 개념체계에서 어떻게 접근하여 재심을 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 측정
- 재무 성과의 보고
- 자본과 부채의 개념

Agenda Paper 10A : 개념체계의 목적과 현재 지위

IASB는 개념체계의 목적, 현재의 지위, 개념체계에서의 일탈과 향후 개정 시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IASB는 개념체계의 목적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잠정적으로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 IASB가 일관성 있는 개념에 기초하여 IFRS 기준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목적
- 특정 거래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IFRS 기준서가 없거나 IFRS 기준서가 회계정책의 선택을 허용하는 경우, 작성자가 일관성 있는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목적
- IFRS 기준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

개념체계의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개별 기준서 제정 시 결론도출근거에 개념체계로부터의 일탈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 공개초안의 제안을 확정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IASB는 개념체계가 때로는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공개초안의 제안을 확정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IASB는 잠정적으로 개념체계가 개정될 수 있는 사건과 상황의 사례를 결론도출근거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genda Paper 10B : 재심의 시 접근 방법

IASB는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는 주제를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그 밖의 주제에 대해서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확정하고 유의적인 추가 분석은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개념체계의 영향분석을 할 때, 다음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분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향후 기준서 제정에 대한 개념체계의 개정 영향
- 개정된 개념체계와 기준서 간의 불일치

그러나 다음은 요구할 것이다.

- 현행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제안된 정의(이러한 정의를 지지한 개념 포함)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영향분석
- 응답자가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개정된 개념체계와 기준서 간의 불일치에 대한 추가 분석
- 개정된 개념체계에 대해 작성자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영향분석

Agenda Paper 10C : 재심의 시 접근 방법_측정

IASB는 측정에 대해 별도의 장(chapter)을 두지 않고 개념체계를 발표하고 향후에 개발 및 추가하는 안을 잠정적으로 반대하고,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에 기초하여 측정에 대한 논의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Agenda Paper 10D : 재심의 시 접근 방법_재무 성과 보고

IASB는 개념체계의 재무성과 보고를 위해 높은 수준의 지침을 제공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이 지침은 공개초안의 제안에 기초하며,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로 수정될 것이다.

Agenda Paper 10E : 재심의 시 접근 방법_자본과 부채의 개념

IASB는 잠정적으로 공개초안의 제안과 일관성 있게 다음을 결정했다.

- 부채와 자본 모두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분류할 때 발생하는 이슈를 다루는 개념은 개념체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하지 않기로 함
- 대신에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프로젝트에서 이 이슈를 다루는 개념을 계속해서 개발하기로 함. 다만,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개정된 개념체계에 추가 개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결론도출근거에 이러한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 개념체계의 향후 개정 가능성을 강조하기로 함

IA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부채의 식별에 대한 그 밖의 문제를 다루는 개념(예 : 공개초안의 문단 4.31~4.39의 “현재의 의무”를 기술한 개념)을 계속해서 개발, 추가하기로 함
- 이러한 개념을 개발할 때, 개념체계에 새로운 개념의 추가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개초안에 대한 제안을 상세화하기로 함

향후 일정

5월에 IASB는 개념체계 공개초안의 제1장(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대상)과 제2장(유용한 재무보고의 질적 특성)의 개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I. 2016년 3월, 4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ASB의 주요 프로젝트 외에 2016년 3월, 4월의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FRS 3 사업결합 : 사업의 정의

IASB는 3월에 IFRS 3에 대해 제안된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 개정으로 사업의 정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명확해 지고 FASB의 개정 사항과 동일해질 것이다(IFRS와 US GAAP의 기존 차이는 예외로 함).

IASB는 IFRS 3의 실무적용지침이 FASB의 개정 사항과는 다르게 기술될 것이라는 데에 주목했다. IASB는 이러한 차이점을 포함하는 공개초안을 발행하고 의견을 듣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향후 일정

IASB는 2016년 상반기내로 공개초안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2. Goodwill and Impairment

IASB는 IFRS 3 '사업결합'의 PIR(post-implement review)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사항들을 '영업권과 손상' 프로젝트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는 FASB와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ASBJ(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사업결합 과정에서 취득하는 '고객관계'에 대한 정의와 가이드의 개선
- 영업권 손상검사 모형에 대한 개선
- 손상차손 인식시기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손상검사모형의 개선

3~4월 IASB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결합 과정에서 취득하는 '고객관계'에 대한 정의와 가이드의 개선

- 고객관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며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런 공정가치 평가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 그런데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에서 자주 취득되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기는 하다. 그러므로 고객관계에 대한 요구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IFRS 3의 IE23에서 예시하는 고객관계는 아래와 같은데, 이에 대해 모든 고객관계는 계약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IASB는 고객관계가 회사와 그의 고객간에 계약서가 존재하는 관계인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종 류	기 준
고객목록	비계약적
주문잔고나 생산잔고	계약적
고객계약 및 관련 고객관계	계약적
비계약적 고객관계	비계약적

- Staff은 가치평가 전문가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험들을 공유받았다.
 - 중요한 금액의 무형자산들은 전형적으로 상표권과 계약적 고객관계를 포함함
 - 고객목록은 가치가 작고, 비계약적 고객관계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가치가 작음
 - 고객에 대한 로열티제도는 비계약적 고객관계의 예라고 언급하기도 하나 다른 관점도 존재함
 - 은행예금자들의 부채와 연관된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에서 하나의 자산단위로 거래되지 않음
- Staff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 고객관계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IFRS 3 및 IAS 38에 추가
 - IFRS 3의 적용사례 중 고객관계에 있는 비계약적 부분의 reference를 제거

영업권 손상검사 모형에 대한 개선

- 현재의 손상요구조건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적용하기가 복잡하며, 일부에서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IAS 36의 현재 손상 요구조건들을 적용하는 비용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다음의 2가지 사항이 IAS 36 규정의 개선목적이다.
 -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정보의 누락없이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손상검사
 - 비용과 효익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더 낮고, 더 적시에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제공

- Staff은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공시를 제안하였다.
 -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의 이유를 식별되는 주요 성과목표와 함께 설명
 - 사업결합 후 1~2년의 주요성과목표대비 실제성과의 비교를 제공
 - 사업결합에 의한 영업권의 명세

손상차손 인식시기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손상검사모형의 개선

- 손상차손이 늦게 인식되는 것과 그에 따른 영업권의 과대계상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형이 연구 및 제안되고 있다.
- 현재 제안되고 있는 검사방법은 사업결합 전에 인식되지 않았던 취득자의 내부창출영업권이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인식되는 시점에, 내부창출영업권 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손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IASB는 대안의 보완 및 개발을 더 요구하고 있다.

IASB는 ASBJ, EFRAG 및 FASB와 함께 최근 몇 년에 대해 공시된 영업권, 손상차손 및 무형자산의 금액과 추세의 양적정보를 수집 및 고려한 뒤 향후 미팅에서 더 논의할 예정이다.

3. 공시원칙

IASB는 2016년 4월 회의에서 공시 프로젝트 중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ASB는 2015년 5월 회의에서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IAS 8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Staff의 outreach에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자들은 현행 IAS 8에서 정의한 회계정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회계추정의 범위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회계추정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고, 회계추정의 변경과 회계정책의 변경은 회계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은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Staff는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정의

IASB는 2016년 4월 회의에서는 현행 IAS 8의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잠정 결정하였다.

-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으로 정의되지만, 근거, 관습, 규칙, 관행이라는 표현은 IFRS에서 사용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을 삭제
-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회계추정의 변경을 가져오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상황은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판단이나 가정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추가

추정기법과 가치평가기법의 변경

IASB는 추정기법과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에 대한 지침을 추가할 것을 잠정 결정하였다. IASB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지침은 IFRS 13 “공정가치 측정”의 문단 65, 66과 유사하다. IFRS 13의 문단 65, 66에서는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IAS 8에는 회계추정치를 만들기 위해 추정기법과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면 그 기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며, 공정가치를 여전히 혹은 더 잘 대표하는 측정치를 산출해 내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문단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시장의 발달, 새로운 정보의 이용, 가치평가기법의 개선, 시장 상황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회계추정의 변경이 타당할 수 있다.

한편, IASB는 회계추정 변경의 성격과 금액을 공시하는 요구사항은 IAS 8에 추가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4.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IASB는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한 research project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부채와 자본의 하위분류를 별도로 표시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Gamma approach¹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잔여 금액에 의존하는 부채의 별도 표시 요구사항의 범위

2016년 4월에 위원회는 잔여 금액에 의존하는 부채를 별도로 표시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위원회는 논의의 범위를 공정가치와 동일한 현금으로 상환될 수 있는 보통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주식들은 Gamma approach에 따르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잔여 금액에 의존하는 독립적인 그리고 내재된 파생상품에도 별도로 표시하는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비교가능성을 개선한다고 논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IFRS 9에서 기업이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된 금융부채 전체를 FVPL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논의했다. 따라서, 미래 토론회(Discussion paper)는 IFRS 9에서의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요구사항과 별도로 표시하는 요구사항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할 것이다.

위원회는 보통주 외에 자본으로 배분되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특정한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보통주 외에 자본의 특성을 가진 비파생상품에 대해, IAS 33에 존재하는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배분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유용하고, 추가적인 비용도 적게 든다고 판단했다. IAS 33은 이러한 상품의 배분과 참여 요소의 효과를 주당순이익의 계산에서 조정해 주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¹ Gamma approach는 부채와 자본 구분 시, 요구되는 결제 시점 및 결제 금액 모두에 초점을 둠. Gamma approach는 청산 전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있거나,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독립적인 금액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 부채로 분류함. 이외의 모든 나머지 claim은 자본으로 분류함.

자본의 특성을 가진 파생상품에 대해, 위원회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배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논의했다.

- Approach A : 어떠한 금액도 배분하지 않음
- Approach B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동일한 금액을 배분함
- Approach C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와 다른 자본의 공정가치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분 금액을 결정함

다음 회의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할 것이다.

- 비파생과 파생의무의 잔여 금액 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
- 별도표시가 당기손익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파생 자본성격에 대해 배분하는 방법
- 보통주가 아닌 자본 성격의 분류에 대한 공시사항을 개선하는 방법

5.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IASB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의 연구 결과를 논의하였다.

-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을 실무상 회계처리하고 있는 방법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회계처리 방법
- 장부금액법(Predecessor method)을 실무상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올바른 장부금액법의 회계 처리 방법

IASB는 향후 회의에서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방법과 관련된 대안들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안에 대해 고려하기로 하였다.



II. 2016년 3월 IFRS 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2016년 3월의 IFRS 해석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행중인 IFRS 개정사항 관련 논의

(1) [IFRS 9], [IAS 28]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측정 시 적용할 기준서

해석위원회는 지분법을 적용하지는 않으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측정과 관련된 IFRS 9 '금융상품'과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2015년 9월과 11월 회의에서 해석위원회는 순투자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에 어떤 손상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특히 IFRS 9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IFRS 9의 문단 2.1(a)의 적용 예외규정이 순투자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에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IASB와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9의 문단 2.1(a)에서는 IAS 28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적용범위에서 제외시켰는데, IAS 28에서는 순투자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을 지분법 적용대상인 투자지분과 구별하였으므로 장기투자지분에 IFRS 9의 손상규정이 적용된다는 Staff의 분석에 동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 현행 규정에 근거한 Staff의 분석에는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IFRS 9에 따라 손상을 검토하고, IAS 28에 따라 장기투자지분에 손실을 인식한 후 다시 IAS 28에 따라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면 두 기준서의 손상 규정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손실이 이중 반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즉, 두 기준서의 상호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 규정을 포함한 IFRS 9의 규정을 장기투자지분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적절하다면 IFRS 9와 IAS 28의 규정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2) [IAS 16] 유형자산의 시험생산 중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

해석위원회는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기 이전(시험과정)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순매각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시험원가를 초과하는 순매각금액을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를 요청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시험과정중인 제품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순매각대금의 인식에 대해 다음 두 가지 회계처리 방식을 논의하였다.

- Approach A :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공제하는 매각금액은 오로지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매각금액으로 제한하고, 공제된 순매각대금은 유형자산 원가의 일부로서 포함된 시험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함.
- Approach B :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어떠한 매각대금의 차감도 금지함.

해석위원회는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품목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Approach B) IAS 16 유형자산 기준서를 좁은 범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3) [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 회수가 가능한 현금 지급액의 회계처리

해석위원회는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R&D 활동의 결과를 이용하여 상업화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서 이 대여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5년 11월 회의에서는 이 약정은 금융부채에 해당하며, IAS 20의 상환면제가능대출의 정의도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기준서에 이미 충분한 지침이 있으므로 이 안건을 Agenda에 추가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약정이 금융부채라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IAS 20의 상환면제가능대출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과 금융부채 최초 인식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회의에서 이 이슈를 추가로 논의할 것이다.

(4) [IFRIC 12] 사회기반시설의 리스와 민간투자사업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지난 2015년 11월 회의에 이어 다시 논의하였다.

- 기반시설이 리스자산이며,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건설 또는 개량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해석위원회는 논의 도중 특히 리스제공자와 사업허가자가 동일한 정부기관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에서 인식과 표시에 대한 이슈의 추가 질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2. 개정제안사항

[IAS 12] 법인세 -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서 지급하는 금액 관련 법인세의 표시

IFRS 해석위원회는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법인세의 표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였다. IFRS 해석위원회는 IAS 12의 문단 52B(배당의 세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가 해당 상황에서 적용하기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견해도 불구하고, 배당의 법인세 효과의 표시와 관련된 문단 52B를 적용하는 것이 문단 52A의 상황(배분된 이익과 미배분된 이익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해석위원회는 IAS 12의 문단 52B가 문단 52A에서 기술한 상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배분과 관련된 모든 지급액에 적용하는 표시 규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IAS 12의 개정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3. IFRS IC Agenda decisions

2016년 3월 해석위원회의 meeting에서 결정된 Tentative agenda decision은 다음과 같다.

(1) [IFRS 9] 순투자위험회피회계 적용의 결정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IFRS 9에 따라 순투자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때 효과적인 부분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특히, 순투자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 요구되는 저가 테스트(lower of test)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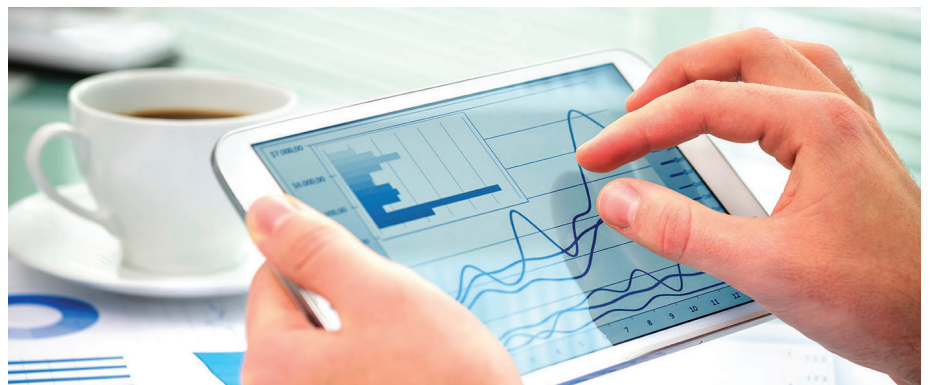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IFRS 9.6.5.13에서는 순투자위험회피회계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해야 된다고 기술하고 있음. 순투자위험회피회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IFRS 9.6.5.13(a)에서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IFRS 9.6.5.11을 참고하고 있음. 해당 문단이 저가 테스트를 포함하고 있음. 해당 내용을 고려할 경우, 순투자위험회피회계처리를 할 때, 기업은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효과적인 부분을 결정할 때 저가 테스트를 적용해야 함
- 순투자위험회피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효과적인 부분을 결정할 때, 저가 테스트의 적용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처분 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이 재분류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음

또한, 해석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설명했다.

- IAS 39에서 순투자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효과적인 부분을 결정할 때 저가 테스트를 적용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유의적인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
- 위험회피회계에 IFRS 9을 적용한 기업이 적기 때문에, 논의되는 이슈가 광범위한지 여부를 결정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판단했음.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IFRS 9이 더 넓게 적용되는 경우라도 유의적인 다양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음

현재 존재하는 기준서를 고려했을 때, 해석위원회는 기준서에 대한 개정이나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해당 이슈를 agenda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 [IAS 16], [IAS38] 자산취득에 대한 변동가능한 지불금액

해석위원회는 사업결합의 일부가 아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매입에 대한 변동가능한 지불금액에 대해 회계처리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해석위원회는 기업(구매자)이 기업의 미래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변동가능한 지불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일에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련활동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합의하지 못했다. 해석위원회는 또한 그러한 변동가능한 지불금액에 대한 부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도 합의하지 못했다.

구매자의 미래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변동가능한 지불금액에 대한 회계원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해석위원회는 리스 프로젝트에 대한 IASB의 심의뿐만 아니라 2015년 5월의 공개초안 “재무보고에 대한 개념체계”에서 제시된 부채의 정의를 고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리스 프로젝트에 대한 IASB의 심의 과정에서, 미래 활동 또는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관된 변동가능한 지불금액이 리스실행일에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혹은 관련 활동 또는 사용의 발생시점에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결정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 이슈는 기존의 IFRS 기준의 범위 안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고 결정내렸고, 이 이슈를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3) [IAS 32] 금융상품 : 선불카드에 대한 부채의 분류

해석위원회는 현금과 교환으로 발행한 선불카드가 부채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선불카드에서 사용되지 않은 잔액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히 해석위원회는 다음의 특징을 가진 선불카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a. 만기가 없고 후취수수료가 없음. 즉, 선불카드의 잔액은 카드보유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감소하지 않음.
- b. 환불, 교환이 불가능하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
- c. 특정 금액의 재화나 용역으로만 교환이 가능함.
- d. 특정 카드 network를 수용한 카드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특정된 제3의 상인에게서만 교환이 가능함. 카드 소유자가 상인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면, 카드발행기업이 상인에게 현금을 인도함.

해석위원회는 카드발행기업이 카드소유자에게 현금을 인도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하여 선불카드가 비금융부채인지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해석위원회는 선불카드에 대한 기업의 의무가 다음을 근거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관찰하였다.

- a. 선불카드 소유자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한 선불카드를 사용을 조건으로 카드소유자를 대신하여 상인에게 현금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 b. 이 계약상 의무를 정산하기 위한 현금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

결론적으로 발행된 동 선불카드는 금융부채로 회계처리 하기 위하여 IFRS 9(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고객충성제도는 이 이슈에 대한 논의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하였다.

IAS 32와 IFRS 9(IAS 39)의 기존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해석위원회는 해석서와 기준서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해석위원회는 이 이슈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4) [IAS 32] 금융상품 : cash pooling약정과 상계에 대한 표시

해석위원회는 cash pooling에 대하여 IAS 32와 관련된 이슈를 분명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는 특정한 cash pooling 약정이 IAS 32에 따른 상계요건을 충족하는지, 특히 정기적인 상계계좌로의 물리적 잔액 이동이 IAS 32의 문단 42(b)에 따른 순액으로 기간말의 잔액을 결제할 의도가 입증 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이슈이다.

분석을 위해 해석위원회는 그 요청이 포함하는 연결실체 내 법적으로 별개인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종속기업을 포함한 cash pooling 약정이 서술된 구체적인 예시를 고려하였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종료일에 IAS 32. 42(a)에 따라 이러한 은행 계좌의 잔액을 상계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자는 모든 별개의 은행계정의 순잔액을 사용한 개념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다. 또한 연결실체는 정기적으로 하나의 상계계좌로 잔액의 물리적 이동을 실시하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동은 cash pooling 약정의 조건하에서 요구되지는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에 수행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보고기간 종료일에 연결실체는 다음 정산일 이전에 종속기업들이 추가적인 현금을 예치하거나, 다른 의무를 정산하기 인출함으로써 그들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것을 예상한다.

연결실체가 IAS 32의 문단 42(b)에 따라 순액으로 상계할 의도를 입증하는지를 고려하는데 있어 해석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였다.

- a. IAS 32의 문단 42는 순액표시가 법적으로 상계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의도가 있을 때에만 미래기대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보다 더 적절히 반영한다고 언급함.
- b. IAS 32의 문단 47에 따라 순액으로 정산할 의도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실무관행, 금융 시장의 요구사항과 순액으로 정산할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다른 환경을 고려하여야 함.

결과적으로 해석위원회는 이슈제기된 cash pooling에 대해 그 약정의 맥락에서, 연결실체에 보고 기간종료일에 종속기업의 은행계좌잔액을 순액으로 정산할 의도가 있는지, 혹은 그 의도가 다음 정산일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종속기업의 개별은행계좌가 사용될 의도인지 평가하기 위하여 상기에 언급한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연결실체에서 종속 기업들이 그 은행계좌를 일반적인 사업 과정에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연결실체가 다음 정산일 이전에 개별적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의 기간말 계정잔액을 순액으로 정산할 것이라고 기대 하지 않는 정도까지 보고기간종료일에 순액으로 전체 종료일 잔액을 정산할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왜냐하면 연결실체와 종속기업의 정상적인 실무관행을 고려하여 이러한 잔액을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미래기대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또한 다른 cash pooling 약정에서 종속기업이 그들의 은행 계좌를 다음 상계일 이전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기대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에 순액으로 상계할 의도가 있는지 결정하는데 있어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의 분석내용과 IFRS에 존재하는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나 기준서의 수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해석위원회는 이 이슈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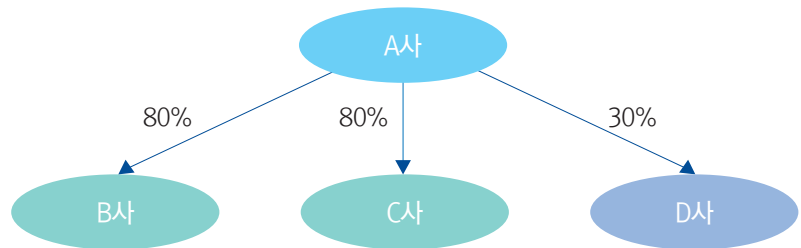
IFRS 실무적용해설

〈실무적용이슈 No.50〉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적용

종속기업투자 또는 관계기업투자와 관련하여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실제로 지분법을 조기적용하고 있다. 간단한 사례를 이용하여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의 선택과 적용방법을 살펴본다.

A사는 종속기업 B사와 C사의 지분 80% 및 관계기업 D사에 대한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1. 지분법 적용 대상의 선택

별도재무제표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K-IFRS 1027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투자, 공동기업투자, 관계기업투자에 대하여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의 범주별로 선택할 수 있는 바 통상 기업들은 종속기업투자, 공동기업투자, 관계기업투자 각각의 회계정책을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지분법이 추가적인 대안으로 인정되고 나서도, 이러한 독립적인 선택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A사는 종속기업인 B사와 C사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관계기업인 D사에 대해서는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2. K-GAAP 상 종속기업 지분법과의 차이

K-GAAP에서는 개별재무제표상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특별한 원칙이 있다. 바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K-IFRS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정되는 지분법은 K-GAAP에서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종속기업을 일반 관계기업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K-GAAP의 다음과 같은 조정이 K-IFRS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게 자산을 하향판매한 경우 미실현이익의 전액 제거
- ✓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대가와 순자산 중 추가취득분과의 차액을 자본에 조정
- ✓ 종속기업 주식 일부 처분 후 지배력을 유지하는 경우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자본에 반영
- ✓ 관계기업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사업결합기준서에 따라 투자차액 산정 (아래 3번 참조)

3.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전환시 지분법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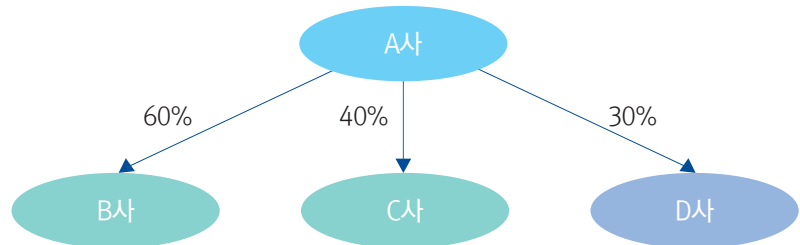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계기업과 종속기업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여부는 독립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A사가 B사, C사, D사에 대해 모두 지분법을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 추가 취득 및 일부 처분으로 인하여 각 범주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회계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KPMG에서는 회계정책의 선택을 인정하고 있다.

- ✓ 우선, 범주간 이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므로 일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 변동과 다름없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방법과 (회계정책 1)
- ✓ 다른 범주로 이동 시에는 새로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방법 - 관계기업이 종속기업이 된 경우에는 사업결합기준서를 적용하여 기존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종속기업이 관계기업이 된 경우에는 계속 보유하는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며, 이 때 발생하는 평가차액은 손익으로 인식함 (회계정책 2)

4. 지분 일부 처분 사례

사례로 돌아와서, A사가 B사의 지분 20%와 C사의 지분 40% 처분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지분율이 변동하였다고 하자. 처분거래로 인하여 C사에 대해서는 지배력을 상실하였다.



처분된 B사 지분의 장부금액은 80,000이고 처분금액은 100,000이다.

처분된 C사 지분의 장부금액은 160,000이고, 처분금액은 200,000이다. 한편,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 40%의 공정가치는 170,000이다. (10,000의 평가증 발생)

A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하여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다.

- B사 지분 처분거래

K-GAAP에서의 지분법 적용시에는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적용 원칙에 의거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순이익과의 일치를 위하여 지분법주식 처분이익을 자본으로 회계 처리하지만, K-IFRS에서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K-GAAP

차 변		대 변	
현금	100,000	지분법적용주식	80,000
		자본	20,000

K-IFRS

차 변		대 변	
현금	100,000	지분법적용주식	80,000
		처분이익	20,000

- C사 지분 처분거래

C사에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대상 주식에서 발생한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차 변		대 변	
현금	200,000	지분법적용주식	160,000
		처분이익	40,000

이와 더불어, 계속하여 보유하게 되는 40%의 잔여지분의 재측정 손익은 A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인식여부가 달라진다. 회계정책 1을 선택하였다면, 처분손익 인식 외에 추가적인 회계처리가 없으며, 회계정책 2를 선택하였다면 잔여지분의 재측정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하는 다음의 분개가 추가로 필요하다.

차 변		대 변	
지분법적용주식	10,000	이익	10,000



KPMG contact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DPP

노원 상무

T. (02)2112-0313

E. wroh@kr.kpmg.com

현승임 상무

T. (02)2112-0528

E. shyun@kr.kpmg.com

한진희 이사

T. (02)2112-6876

E. jinheehan@kr.kpmg.com

한상현 S.Manager

T. (02)2112-7072

E. shan1@kr.kpmg.com

이지원 S.Manager

T. (02)2112-7625

E. jeewonlee@kr.kpmg.com

한지명 S.Manager

T. (02)2112-7928

E. jimyunghan@kr.kpmg.com

박동원 Manager

T. (02)2112-3264

E. dongwonpark@kr.kpmg.com

양유정 Manager

T. (02)2112-6940

E. youjeongyang@kr.kpmg.com

kpmg.com/kr

© 201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